

과징금납부통지서
(수납기관 보관용)

발 행 번 호		
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위 반 일 자		
위 반 행 위		
납 부 금 액		
납 부 기 한		
수 납 기 관		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 제1항·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·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 수납인		

과징금영수필통지서
(지방환경관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
보관용)

발 행 번 호		
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위 반 일 자		
위 반 행 위		
납 부 금 액		
납 부 기 한		
수 납 기 관		
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수납인		

과징금납부영수증
(납부자 보관용)

발 행 번 호		
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위 반 일 자		
위 반 행 위		
납 부 금 액		
납 부 기 한		
수 납 기 관		
위와 같이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 수납인		